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55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강준현 · 권칠승 · 김승원
김영호 · 김현정 · 문대림
문진석 · 박상혁 · 신장식
이강일 · 정진욱 · 허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를 각각 정의하고 있음.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규모는 2021년 6조 6,649억원에서 2025년 3월 기준 10조 3,34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기습적인 폐업이나 등록취소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선수금의 환불이나 보장 등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선수금 사고 피해자 수는 16만 3천여명,

피해액의 합계는 1,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무엇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수금의 목적 외 유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상시 감사의 근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유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피해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수금을 추가로 정의함과 동시에 선수금에 대한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배주주 등을 향한 신용 공여 행위의 한도 제한을 두며,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도록 함.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업신고 전 행정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이전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제27조의4,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7조의2 신설 및 제2조·제27조·제34조·제35조·제46조·제48조·제5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10.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재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경우(이하 “재등록”이라 한다)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9조,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선수금”이라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행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화번호·납입내역 등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0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7조의4제4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장제2절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주주등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함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3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배주주 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범을”을 “범(제34조의3·제34조의4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 제41

조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3장 제3절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감독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을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그 지배주주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사무의 위탁)”을“(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의 “제1항”을 “제27조의4 및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사업자단체의”를 “자의”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4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의2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3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항제10호의2·제10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u> <u>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u> <u>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u> <u>수령한 금액을 말한다.</u>
6. · 7. (생 략) <u><신 설></u>	6. · 7. (현행과 같음) <u>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u> <u>말한다.</u> <u>가. 이사</u> <u>나. 대표이사</u> <u>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u> <u>임사원</u> <u>라. 감사</u> <u>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u> <u>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u> <u>사람</u>
8. · 9. (생 략) <u><신 설></u>	8. · 9. (현행과 같음) <u>10. “신용공여”란 금전 · 증권</u> <u>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u> <u>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u> <u>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u>

<신 설>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3(재등록자에 대한 행정 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경우(이하 “재등록”이라 한다)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9조,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 ② ~ ⑫ (생략)
- <신설>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선수금-----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세부 정보의 제공
 4. 소비자피해보상의 접수·진행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성명·전
화번호·납입내역 등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의 확인을 위하
여 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조회·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
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
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
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제45조에 따라 등록
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룰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7조의4제4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같은 조

라. (생략)
11. ~ 18. (생략)
<신설>

<신설>

제5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현행 라목과 같음)

11. ~ 18.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신 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주주등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함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3제1

	<u>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u> 4. <u>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배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u> ② <u>금융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u>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u>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법 (제34조의3·제34조의4조를 제 <u>외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제</u>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신 설>

37조,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
41조에서 같다)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소비자원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감독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을 감독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감독에 대해서는 금융위
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

회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나 그 지배주주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제46조(사무의 위탁) <신 설>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보고, 조사·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

-----.

⑤ 제27조의4 및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
-- 자의 -----

-----.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5. (생략)

②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제48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4의 금지행위를 한 자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11. · 1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단서 신설>

2의2. 제37조의2에 따른 검사·

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

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3제4항·제5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

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

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1.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다만, 제1항2의2, 제2항제10

의2·제10의3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	----------------